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월 5일

발의자 : 박종욱 의원

찬성자 : 박찬원, 함명섭  
장문혁, 이범연  
임영순 의원

## 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8년 1월 11일,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「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」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 심 사 제 획

## 1. 활동목적

-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## 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-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
-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3. 활동기간

- 2018년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로 한다.

#### 4. 구성

-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범연 의원  
임영순 의원

#### 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2018. 1.11 (목)	제1차 조례특위 (14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</li> <li>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</li> <li>3.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</li> <li>4.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li> <li>5.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</li> <li>6.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7.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</li> <li>8.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9.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</li> <li>10.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</li> <li>11.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12.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li>13.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</li> <li>14.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</li> <li>15.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</li> <li>16.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</li> <li>17.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li> </ol>	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